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시행계획(안)

2023. 3.

한 국 장 학 재 단
초 중 등 장 학 부

목 차

I. 사업 개요	2
II. 장학생 선발	5
III. 장학생 지원	17
IV. 장학생 자격관리	23
V. 장학생 지급 사후관리	33
VI. 추진 일정	37
[별첨]	39

2023년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사업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70억 원 - 사업비: 189.8억 원 - 운영비: 5.6억 원 - 원금보전성 출연금: 875억 원 ※ 누적 2,625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54억 원 - 사업비: 273억 원 - 운영비: 5.6억 원 - 원금보전성 출연금: 875억 원 ※ 누적 3,500억 원 									
선발 규모	기본유형 (장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2,400명, (실적) 2,800명* * 잔여 예산 발생에 따른 400명 추가선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계획</th> <th>실적</th> </tr> </thead> <tbody> <tr> <td>꿈 유형</td> <td>1,500명</td> <td>1,836명</td> </tr> <tr> <td>재능 유형</td> <td>500명</td> <td>364명</td> </tr> </tbody> </table>	구분	계획	실적	꿈 유형	1,500명	1,836명	재능 유형	500명	36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2,400명 ※ 잔여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꿈 유형) 2,000명 ※ 꿈 유형으로 통합 선발
	구분	계획	실적									
	꿈 유형	1,500명	1,836명									
재능 유형	500명	364명										
특별유형 (한시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계획</th> <th>실적</th> </tr> </thead> <tbody> <tr> <td>SOS 유형</td> <td>400명</td> <td>600명</td> </tr> </tbody> </table>	구분	계획	실적	SOS 유형	400명	6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S 유형) 400명 				
구분	계획	실적										
SOS 유형	400명	600명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만 24세 이하 										
꿈 장학금 성적 산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인정 교과목 지정 - (중2~고1) 6과목 인정 - (고2~고3) 7과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인정 교과목 범위 확대 - (중) 8과목, (고) 10과목 - 자유학년(기)제 기준 도입(P/F) ※ 중1은 최소기준 없음 										
SOS 장학금 신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1) 학교장 추천 (유형2) 긴급지원 대상자 (유형3) 기타 긴급지원 필요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 통합) 학교장 추천 										
교육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험 활동 등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제도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링 특별활동 지원 정규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꿈 마일리지 제도 미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꿈 마일리지 제도 도입 -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점수를 부여해 인센티브 제공 추진 										
사후 관리 강화	카드 사용 업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개 업종 - 통신기기, 가구 업종 추가 									
	사용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3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4회 실시 									
	반환 유예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가지 유형 운영 (출산, 군복무, 장애, 부모사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차상위 반환유예 유형 신설 ※ 본인에 한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유형* 연령기준: 19세 (본인 장애, 기타 사유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유형 연령기준 삭제 									
반환면제 및 감면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 3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차상위 										

I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 사업 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8조(장학제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국가의 책무) 등

□ 추진 경과

- ('18. 8.) 복권기금 등을 활용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교육부), 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문체부) 등 포함
- ('18. 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 확대(대학생 → 대+초·중·고)를 통한 사업수행 근거 마련
- ('19. 7.)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꿈 유형) 1,500명 선발 및 지원
- ('19. 8.)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 ('20. 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출연 협약식* 개최
 - * 기재부 복권위-교육부-재단 간 원금보전성 기금 3,500억 원에 대한 출연 협약
- ('20. 7.~1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1,000명 선발 및 지원
 - ※ 꿈 유형 700명, 재능 유형 250명, SOS 유형 50명
- ('21. 7. ~ 1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1,200명 선발 및 지원
 - ※ 꿈 유형 750명, 재능 유형 250명, SOS 유형 200명
- ('22. 7. ~ 1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2,800명 선발 및 지원
 - ※ 꿈 유형 1,836명, 재능 유형 364명, SOS 유형 600명

□ 2023년 예산: 총 115,386백만 원

- 사업비 27,323백만 원, 운영비 563백만 원
- 원금보전성 기금* 4차분 출연금 87,500백만 원

* 총 3,500억 원, '20년 ~ '23년까지 연 875억 원씩 분할 출연

□ 지원유형

- (꿈 장학금)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까지 장기 지원
- (SOS 장학금) 학업 중단위기 중·고생을 선발하여, 10개월간 한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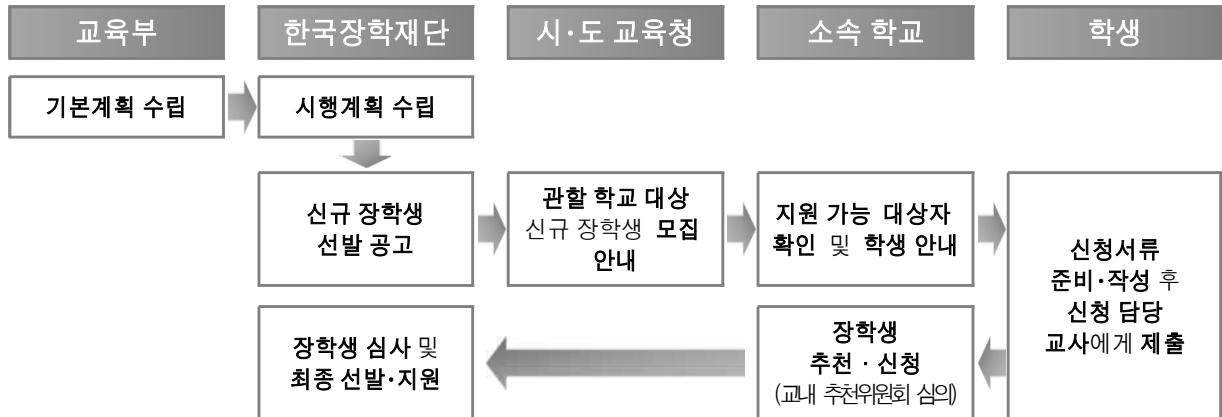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중1 ~ 고3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 단, SOS 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 (지원인원) '23년도 신규 장학생(2,400명 내외) 및 계속 장학생*(약 5,000명)
 - * '19 ~ '22년 선발 장학생 중 계속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학업장려비(매월 카드포인트) 및 교육 프로그램(멘토링 등) 지원

구분	중 학생	고 등 학생	대 학생
학업 장려비	장학금 월 25만 원	장학금 월 35만 원	장학금 월 45만 원
교육 프로그램	복꿈 성장 멘토링(교사 등 교육 현장의 전문가와 1:1 멘토링)		사회 환원 활동 참여 - 후배 장학생의 멘토 역할 수행 - 사회봉사 활동(30시간 이상)
	복꿈 나눔 멘토링(대학생 선배 장학생과의 멘토링)		
	멘토링 특별활동 지원(문화체험·대학탐방 등 활동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장학증서 수여식 + 캠프 프로그램 + 기본교육)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진로·진학·취업·창업 등 장학생의 성장상황에 맞추어 세분화 지원)		
	심리안정 프로그램(장학생의 고민, 심리적 불안감 등에 대한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 SOS 장학생의 경우, 한시적 장학금(10개월간 월 30만 원)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 (교육부) 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승인, 사업운영 총괄
- (한국장학재단) 시행계획 수립, 장학사업 운영, 출연금 관리 등
- (시·도 교육청) 장학생 선발지원 및 관리지원, 협조체계 구축
- (학교) 장학생 추천(교내 위원회 심의) 및 신청, 학생 서류 온라인 접수
- (학생(장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준비(학업 및 성장 관리)

□ 사업 일정

※ 아래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꿈 유형 신규 선발				신청 ▶ '23. 4. 3. ~ 4. 21.		심사 및 선정 ▶ '23. 6월 말 결과 발표						
SOS 유형 신규 선발				신청 ▶ (1차) '23. 4. 3. ~ 21.		심사 ▶ '23. 5월 발표		신청 ▶ (2차) '23. 8. 21. ~ 9. 8.		심사 ▶ '23. 9월 발표		
계속 지원 여부 심사				정기 심사 ▶ '22. 12월 ~ '23. 2월				보완 심사 ▶ '23. 7월 ~ 8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급자격 소명 기간*			수급자격 소명 기간*					
				*기초생활수급·법정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수급자격 미충족 시 3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복꿈 성장(1:1) 멘토링(연중 상시, 중·고생 학기별 2회 이상 필수)								
				대학생-중·고생 선후배 간 멘토링 프로그램			복꿈니눔멘토링					
				문화체험, 대학탐방 등 특별활동 지원				멘토링 특별활동 지원				
				증서수여식 및 장학생·멘토 대상 필수교육 실시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II
'23년 장학생 선발
< '23년 신규 장학생 선발 주요 내용 >

구분		꿈 장학금	SOS 장학금
선발인원		• 2,000명 ※ 사업 잔여 예산 및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 400명
선발 자격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중·고교 재학생(중1~고3) / 만 24세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학업중단 위기 학생
	교과	• (성적) D등급(또는 7등급 이내) 이상	
	비교과	• (출결)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봉사) 10시간 이상 ※ 코로나19 감안, 한시적 미적용	-
추천방식		• 학교 추천(최대 2명) • 추천 받은 장학생의 멘토(교사 또는 교직원)가 신청	• 학교당 추천인원 제한없음 • 교내 장학 담당자가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시	• 신청인 기본정보 • 신청인·보호자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1인 동의 필수	• 신청인 동의서
	평가 후 ※대상자 별도안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수급자격 전산조회 불가 시) 별도 증빙 제출 • 나의 꿈 도전계획서	- • SOS 장학금 신청서
심사 · 선발	서류심사	•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 대상자 입력정보 확인(재단 실무진)	
	심층평가	•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지역별 평가단)	• 'SOS장학금 신청서' 평가(SOS 평가단)
	최종선발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신청 시 유의사항

- ❖ 본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부예산 편성 등 정책 상황에 따라 지원 수준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교육부 정책 결정에 따라 계속 지원 장학생에 대한 자격기준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장학금 신청 시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장학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p.38 참조)

가. 꿈 장학금 학교가 추천한 중·고생 중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

□ 신규 선발 자격요건: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으로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소득 기준) 학교 추천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교과 기준) 직전 학년도 성적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대상	최소 교과기준	성적 산출 기준
중1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 ~ 고1	직전 학년 평균 D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 가정·정보 중 과목 선택 * 단, 자유학년(기)제의 경우 PASS일 경우 인정
고2 ~ 고3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D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제2외국어, 과학계열(전문교과 I), 외국어계열(전문교과 I) 전문교과 II 중에서 과목 선택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④ (비교과 기준) 직전 학년 출결·봉사활동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대상	출결	봉사
공통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단,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직전 학년 봉사활동 실적 10시간 이상 (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3년 선발 시 봉사기준 미적용)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23년 선발 규모: 총 2,000명

※ 사업 잔여예산 및 타 유형 선발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변동 가능

□ 학제별·지역별 선발 배정 인원

- (학제별) 중학생 800명, 고등학생 1,200명
- (지역별) 학제별 선발인원을 시·도별 학교 수를 기준으로 인원 배정

〈 '23년 꿈 장학금 지역별 선발 배정 인원 〉

(단위: 명)

교육청	배정 인원		교육청	배정 인원		교육청	배정 인원	
	중	고		중	고		중	고
서울	96	162	울산	16	29	전북	52	67
부산	42	72	세종	7	11	전남	61	73
대구	31	48	경기	160	246	경북	64	94
인천	35	64	강원	39	58	경남	65	96
광주	23	34	충북	31	41	제주	11	15
대전	22	31	충남	45	59	합계	800	1,200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기준('22.10)

□ 꿈 장학생 선발절차

1단계 학교추천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심층평가	4단계 최종선발
학교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추천 (학교별 최대 2인)	제출서류 확인·점검, 최소 자격요건 심사 (소득·성적·출결·봉사)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 (지역별 평가단)	최종 장학생 확정 (장학생 선발· 관리위원회)
'23. 4. 3. 9:00 ~ 4. 21. 18:00	'23. 4 ~ 5월	'23. 5 ~ 6월	'23. 6월 말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단계 **학교 추천**

- (추천 대상)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을 교내 장학생 추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각 학교별 **최대 2인까지 추천 가능***
- * 학교별 장학생 선정 등을 위해 기 구성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추천 가능
- (추천 기준) 추천대상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인성, 장학금 지원 필요성(진로, 학업계획의 구체성, 가치관, 실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 추천 시 유의사항 〉

• (사회적 물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추천 제외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

• (이중수혜) ①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②저소득층 대상 ③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④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 ③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 ④ 특정 기간 중 2회차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① + ② + ③ + ④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이 불가하나, 최종 선발일 이후 재단이 통지한 추가서류 제출 기한 내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기관 발급)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SOS(1차)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 단, '23년 이전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꿈 유형 신청 가능

- (추천 기간) '23년 4월 3일(월) 9:00 ~ 4월 21일(금) 18:00

※ 신청기간 관련 세부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며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반드시 신청마감일 내 온라인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추천 방법) 교사 또는 교직원*은 재단 학자금 지원시스템 (<https://eduman.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생의 기초정보 및 신청 관련 제출서류 등을 온라인 접수·제출**

* 신청교사 또는 교직원은 복꿈 성장 멘토링 멘토로서 활동 함을 원칙으로 함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제출서류)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 추천대상의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및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만 14세 미만 학생 추천의 경우, 반드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3번) 내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대상	세부 내용	비고	
신청시 제출	1	신청인 기본정보	학생	학생 기본정보(시스템 입력사항, 제출 불필요)	-
	2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 (부모)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 복지 센터
	3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학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1인 서명 필수	-
	4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 대리인 (부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용)	-
	5	나의 꿈 도전계획서	학생	학업 및 진로희망에 대한 구체적 계획	-
	6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택 1) ※ 학생 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 해당 자격을 보유한 경우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행정 복지 센터 국민건강 보험공단
심층 평가 통과 후 제출*	7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개인정보동의서	멘토	멘토가 직접 작성한 멘토링 활동 계획제출(학교장 직인 포함)	-
8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반드시 기한 내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 **2단계 서류 심사**

- (제출서류 확인) ①신청자 학년 정보(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②만 14세 미만 신청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③필수 신청 서류 4종* 제출 유무 및 ④필수 기입사항(서명 등) 점검 등
 -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나의 꿈 도전계획서
- (수급자격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정보 연계·활용 하여 신청 학생 가정의 저소득*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 수급자격 전산확인 불가자의 경우 수급자격 증빙서류 별도 제출 안내 예정
- (교과·비교과 요건 확인) 직전 학년의 최소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심층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신청 시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최종 확인

○ **3단계 심층 평가**

- (지역별 평가단 구성) 서류심사 통과자의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천·구성

〈 지역별 평가단 구성 기준 〉

- (구성) 평가 그룹별 총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 복지·인재개발 전문가, 입학사정관, 교원, 장학사 등 교육·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 ** 추천명단으로 구성된 위원 Pool에 무작위 순위를 부여하여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
- (절차) 17개 시·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소속기관 관할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평가위원으로 배정

- (평가내용) 「나의 꿈 도전계획서」에 기술된 학생의 역량, 잠재력, 발전 가능성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평가그룹별 5인 1조로 구성하고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3인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학제별·지역별 배정인원 범위 내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부여**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추가 서류제출) 심층평가 통과자는 필수서류 2종을 멘토를 통해 학자금지원시스템으로 통지 기한 내 제출(별도 통지 예정)*

* 통지 기한 내 미제출 시, 후순위자에게 선발 기회 부여 예정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1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개인정보동의서	멘토	멘토가 직접 작성한 멘토링 활동 계획제출 ※ 학교장 직인 포함	-
2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 날짜, 성명, 자필서명, 학교장 직인, 원본대조필 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단계 **최종 선발**

- (심의주체)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

- (구성) 교육·장학 등 관련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7인 내외
- (기능) 장학생 최종 선발 심의·의결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등
- (방법)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세부사항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름

- (선발방법) 17개 지역의 학제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심층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부여하며, 추가 서류제출 결과를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장학생 심의·의결

〈 최종 선발인원 결원 발생 시 〉

최종 선발일 이후 최초 장학금 지급일 전까지 선발인원 결원 발생 시, 동일 지역 내 후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후순위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 지역의 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최종 선발자가 타 기관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경우*,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 기관 발급)를 재단이 통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장학생 이중수혜 기준 p.11 참고
- (결과안내)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선정 결과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사항 개별통보 예정

나. SOS 장학금 신청한 중·고생 중 위기상황 정도, 학업 열의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

□ 신규 선발 자격요건: ① ~ ②을 모두 충족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①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긴급 구난사유 해당 학생으로 만 24세 이하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긴급 구난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 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 '23년 선발규모: 총 400명

○ (SOS 1차: 5월) 300명, (SOS 2차: 9월) 100명

- 중·고생 학제별 선발인원은 학제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 사업 잔여예산 및 별도 채용 확보 등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변동 가능

○ (유의사항) SOS 장학금(1차)는 꿈 장학금과 중복신청 불가* 및 기존 SOS 장학생의 경우 '23년 SOS 장학금 재신청 불가

* SOS 장학금(2차)의 경우, '23년 꿈 장학금 탈락 시 신청 가능

□ 선발절차

1단계 학교추천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심층평가 및 최종선발
학생 신청 의사에 따라 학생 추천 (학교별 제한 없음)	제출서류 확인·점검, 최소 자격요건 심사	「SOS 장학금 신청서」 평가 (SOS 평가단) 및 최종 장학생 확정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생략
[1차] '23. 4. 3. ~ 21.	'23. 4 ~ 5월	'23. 5월
[2차] '23. 8. 21. ~ 9. 8.	'23. 9월	'23. 9월

※ 학교 폭력 가해 이력 외 소득·성적·출결·봉사 등 모든 자격 심사 제외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단계 학교 추천**

- (추천 대상) 각 학교는 추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발굴하여 학교별 신청 인원 제한 없이 장학생 추천 가능

〈 추천 시 유의사항 〉

- (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추천 제외
 -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SOS(1차)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 ※ SOS 장학금(2차)의 경우, '23년 꿈 장학금 탈락 시 신청 가능
- (기 수혜자)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불가

- (추천 기간) [1차] '23년 4월 3일(월) 9:00 ~ 4월 21일(금) 18:00

[2차] '23년 8월 21일(월) 9:00 ~ 9월 8일(금) 18:00

※ 신청기간 관련 세부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며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반드시 신청마감일 내 온라인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추천 방법) 장학금 신청 담당 교사*는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https://eduman.kosaf.go.kr>)에 접속하여 추천대상 학생의 기초정보 및 신청 관련 제출서류 등을 온라인 접수·제출**

* 신청 대상 학생의 소속학교 장학 담당교사, 담임교사, 학교 복지사 등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제출서류)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 추천대상 학생의 신청인 기본정보(서류1) 입력 및 필수 제출서류(2~3번)* 업로드

* 만 14세 미만 학생('09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 추천의 경우, 반드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3번)** 내 **법정대리인 1인**의 동의 필요

* 긴급구난 사유제출 증빙은 소속 학교에서 추천한 내용으로 인정(단, SOS 장학금 신청서 내 소속 학교장 추천 및 직인 필수)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신청 시 제출 서류	1 신청인 기본정보	학생 학생 기본정보(시스템 입력사항, 제출 불필요) ※ 담당교사는 기본정보 시스템 입력 후 해당 서류는 제출 불필요(학교 보관)	-
	2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학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1인 서명 필수	-
	3 SOS 장학금 신청서	학생 긴급한 위기상황 및 학업의지·계획 구체적 서술 ※ 신청 시 소속 학교의 학교장 추천·직인 필수	-
심층평가 통과 후 제출*	4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반드시 기한 내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 2단계 서류 심사

- (제출서류 점검) ①신청자 학년 정보(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②만 14세 미만 신청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③필수 신청 서류 2종* 제출 유무 및 ④필수 기입사항(서명 등) 점검 등

*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SOS 장학금 신청서

○ 3단계 심층 평가 및 최종 선발

- (SOS 평가단 구성) 서류심사 통과자의 「SOS 장학금 신청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천·구성

< SOS 평가단 구성 기준 >

- (구성) 평가 그룹별 총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 복지·인재개발 전문가, 입학사정관, 교원, 장학사 등 교육·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 ** 추천명단으로 구성된 위원 Pool에 무작위 순위를 부여하여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
- (절차) 17개 시·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배정

- (평가내용) 「SOS 장학금 신청서」에 기술된 긴급한 위기상황의 정도, 학업의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평가그룹별 3인 1조로 구성하여 산술평균* 후 학제별 배정인원 범위 내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부여**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추가 서류제출) 심층평가 통과자(후순위 대상자 포함)*는 필수서류를 학자금지원시스템으로 통지 기한 내 제출(별도 통지 예정)
 - * 필수서류 미제출·누락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 (선발 방법) 학제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심층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부여하며, 평가 후 서류제출 결과를 최종 장학생 선발
 - 최종 선발일 이후 최초 장학금 지급일 전까지 선발인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를 추가 선발 가능
 - ※ 신속 선발 및 지원을 위해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안내)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선정 결과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사항 개별통보 예정

III

장학생 지원

가. 장학금 지원 자격유지 중인 장학생에 한하여 매월 카드포인트 방식의 장학금 지급

□ 지원금액: 유형별·학제별 장학금 지급(카드포인트 지급)

○ (꿈 장학금) 학제별 월 25만 원 ~ 45만 원 차등 지급

○ (SOS 장학금) 학제 상관없이 월 30만 원 균등 지급

〈 유형별 장학금 지원 내용 〉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꿈 장학금	월 25만 원	월 35만 원	월 45만 원
SOS 장학금	월 30만 원(*24년 대학 진학자도 동일 적용)		

〈 장학금 수혜 시 유의사항 〉

- 학적변동(자퇴, 휴학, 복학, 조기졸업, 편입학, 재입학, 타학교 신입학 등) 발생 즉시 장학생은 재단으로 알려야 하며,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일 이후 장학금 초과 수혜 시 반환 또는 최대 지원 횟수에서 차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기간

○ (꿈 장학금) 매년 계속 장학생 정기(2월)·보완(8월)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연계하여 지원 예정

- 대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별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원 가능**

* (예시) 2년제 전문대 → 2년 지원, 4년제 → 4년 지원, 6년제 → 6년 지원

** 초과학기 및 대학원 등은 지원 불가

○ (SOS 장학금) 선발 후 총 10개월간 한시적 지원

- 지원기간 중 학업 중단 시 학업 중단일 익월부터 장학금 지원중단

- 학년 미진학·상급학교 미진학 시 차년도 2월까지만 지원

< 학적변동 사유별 장학금 지원 여부 >

구분		지원 여부		
1	대학생	재입학, (타학교)신입학, 편입(상급학교 진학 포함), 전공심화과정 진학	지원 가능	신규 진학한 대학 학제의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기 수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장학금 지원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지원 가능
			지원 불가	직전 학기 중퇴 후 사유 발생 시에는 학업중단에 해당되어 지원중단
2		교환학생	지원 가능	소속학교 학제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되며 장학금 카드사용은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
3		휴학	지원 불가	휴학 시 장학금 지원중단(자격유예) ※ 학기 중 휴학 시 복학시점까지 장학금 지원이 유예
4	고교생	고교 졸업 후 재수 예정자	지원 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대학교 미진학 한 재수생은 지원중단 ※ 단, 계속지원 장학금 신청 및 심사 승인 시 1년 간 1회에 한하여 자격유예 → 졸업 당해연도(3월)부터 차년도 신입학 확정(2월)까지

※ 학적변동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장학금 초과 수혜 발생 시 최대 지원횟수에서 차감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방식: 장학금 카드(장학금 지원액만큼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 (발급 방법) 재단 협약 금융사를 통해 장학금 카드 신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및 학생증 지참 후 하나은행*(하나카드)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장학금 카드는 재단과 협약한 금융사에서만 발급 가능(협약 금융사가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만 14세 미만* 장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카드발급 필요

* 만 14세 미만 학생('09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사용기준) 장학금은 매월 5일 지급되며, 현금 지급 및 인출 불가
 -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차년도 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나, 미사용 잔액은 차년도 3월부터 사용 불가
 - ※ 매월 장학금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속지원 정기심사기간에는 5일 이후 지급 가능
 - 지원종료자*의 경우, 지원종료일을 기준으로 당월 말까지 사용기간 보장
 - * 졸업, SOS 지원기간(종료일 다음 날부터 산정) 등 정상 종료자를 의미하며, 비정상 종료자(자격박탈 등)의 경우는 즉시 사용중단

□ 사용범위: 학업장려비로 사용 가능

- 생활비가 아닌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의 필요(해외사용 불가)
 - ① **교육 학습 및 진로역량 개발 지원**: 교육비, 서적, 문구, 학원비 등
 - ② **진로·적성 탐색기회 지원**(체험학습, 취미·레저 포함): 문화·취미, 숙박업 등
 - ③ **학업 환경 조성 지원**: 일반음식, 음료, 식품, 안경 등
 - ※ 장학금 카드 사용가능 업종: 총 64개 업종(별첨1 참고)
 - (적정사용 점검) 부적절한 장학금 사용으로 의심될 경우,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에 비협조적이거나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장학생 지원제한 기준(p.33 참고)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장학금 카드사용 유의사항 〉

- [온라인 사용 우선소명 유의] 온라인 카드사용은 재단의 정기 모니터링에서 우선 소명 대상이 됨을 참고하여 신중한 카드사용 필요
- [장학금 카드사용 불가 업종] 가정·차량 관련 용품 구입, 보건·의료 및 금융·공과금 관련 지출, 상품권 구매, 목욕·미용·안마 등 생활서비스 일체 등의 가계 생활비 용도에 해당하는 카드사용은 절대 불가

❖ 카드사용 소명 불가 시 향후 지급될 장학금에서 해당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등의 조치 가능

나. 교육 프로그램 지원 **꿈 장학생의 성장 및 자립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후 교육부 승인하에 실행〉

□ **복꿈 성장 멘토링**(교직원 등 교육현장의 전문가와 1:1 멘토링)

[교육목표] 장학생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으로 안정적 성장 도모

- (교육대상) **중·고 장학생(장기지원 유형) 의무 참여**
- (교육일정) **연중(학기별 2회 이상, 연간 4회 이상 필수)**
- (교육내용) 멘토와 다양한 멘토링 활동(문화활동, 진로·진학 상담, 개인상담 등)

- (멘토 지정) 장학생 선발 전, 학생과 상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멘토링 지원이 가능한 멘토의 정보를 입력(**필수기입 정보**)

※ 장학생 선발 전 ①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②개인정보동의서, ③계좌정보 제출 필수

- (자격요건) **멘토는 장학생의 소속학교 교직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장학생 신청 시 신청 교사 역할을 병행**

⇒ 장학생의 성장 지도가 가능하며, **결격사유 없는 자***를 멘토로 지정(**학교장 확인 필수**) * 멘토 자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p.24 참고

- (멘토 변경) 멘토는 **학년 단위로 변경 가능***

⇒ 멘토 변경 시에는 ①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②개인정보동의서, ③계좌정보 제출 필수

질병·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불성실 활동 등의 자격 제한 사유 발생에 한하여 소속학교 교직원으로 멘토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장학생(또는 멘토)은 재단에 즉시 연락**하여야 함.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 소속외 담당자로 멘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단 승인 필요

- (멘토 지원) 멘토링 활동 지원비*(회차별 10만 원), 멘토 위촉장(교육부 장관 명의) 멘토링 가이드북 등 제공

* 학기별 2회, 연간 총 4회 멘토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장학생 선발 후 별도 안내 예정

- (활동 점검) 장학생과의 멘토링 활동은 정기심사 시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를 통해 점검

〈 복공 성장(1:1) 멘토링 멘토 자격 결격 사유 〉

- 한국장학재단 인사규정 제10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른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따른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10.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1. 폭력, 경제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채용비위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로서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회적 물의(민·형사사건, 성희롱 등)를 일으킨 자
- 현재 정치활동 중이거나 멘토링 활동 기간 중 정치활동 예정 중인 자
- 특정 이념에 치우친 활동을 진행했거나, 예정 중인 자
- 멘토링 활동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 권장 멘토링 활동 횟수 미만의 활동을 하였거나, 중도 포기 등 적극적인 활동 의지가 없는 경우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학교장 및 한국장학재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복꿈 성장 멘토링 특별활동 지원(중·고생 대상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프로그램)

[교육목표] 중·고생에게 특별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 지지 및 동기부여 강화

- (교육대상) 복꿈 성장 멘토링팀 중 희망자
- (교육일정) 6 ~ 10월
- (교육내용) 문화체험, 대학탐방 등 폭넓은 체험활동을 지원

복꿈 나눔 멘토링(대학생-중·고생 선후배 장학생간 멘토링)

[교육목표] 선·후배 장학생간 소통·교류 및 상호 성장 지원

- (교육대상) 전체 장학생(장기지원 유형) 중 희망자
- (교육일정) 6 ~ 10월
- (교육내용) 자기주도 학습법·진학 경험 공유 등 온라인 멘토링 진행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전체 장학생들을 위한 축제의 場)

[교육목표] 국가장학생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다양한 교육적 체험 제공

- (교육대상) 전체 장학생(장기지원 유형)
- (교육일정) 7 ~ 10월(약 4개월 간, 장학생의 기본교육 이수 프로그램 운영)
- (교육내용) 장학증서 수여식, 오리엔테이션, 명사 특강, 직업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전체 장학생에게 진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교육목표] 전문가 맞춤 지도를 통해 장학생의 진로개척 능력 향상

- (교육대상) 전체 장학생(장기지원 유형)
- (교육일정) 6 ~ 11월
- (교육내용) 학년·학제별 개별 장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 복·꿈 마일리지 제도 도입 >

- (목적) 장학생의 능동적인 참여 기반 마련 및 자립역량 강화
- (내용)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점수부여 방식으로 운영하며,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세부 마일리지 적립 기준 마련 예정

IV 장학생 자격관리

가. 계속지원 기준

장학사업 지속 수혜를 위한 장학생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 ❖ (계속 장학생 유의사항)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계속지원 장학생에 대한 연도별 자격기준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23년 꿈·재능 장학생 계속지원 기준 >

구분		중1~고2	고3('24년 대학교 입학예정자)	대학교 재학생
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학교 학년 진급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 예정인 자 ※ 단, 당해연도 고교 졸업예정자 중 대학교 미진학 한 재수생 예외 적용(p.28 참고)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교과	성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백분위 80점 이상 ※ 학기별 2회 이상 기준 미달 시 자격중단
비교과	출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사회 공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 지정 프로그램 참여 또는 봉사 30시간 택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멘토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별 2회, 연 4회 이상 의무 활동 - (1학기) 3~8월, (2학기) 9~12월 		-
필수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학업 계획서('24년 대학 입학 및 재수 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정규 졸업학기 종료 2개월 전 先 제출
필수서류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입학 증빙서류* * 재수예정자는 차년도 계속지원 정기심사 시 제출 필요 	-
이중수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②저소득층 대상 ③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④계속적으로 수혜받지 않는 자 ※ ①~④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는 지원대상 제외(세부기준 p.32 참고) 		

※ 한시적 지원대상인 SOS 장학생은 계속지원 심사에서 제외(단, 지원제한 사유 발생 시 자격중단)

□ 지원대상: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 ① (학적 상태) 중·고등학교 학년 진급 또는 고등학교 진학(래 표) 예정인 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②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 ③ (비교과 기준) 직전 학년 출결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 점검

대상	내용
출결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단,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사회적 물의 여부*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이 원칙이며, 계속심사 시 정기점검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

- ④ (멘토링 활동) 1:1 멘토링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필수
 - ※ 신규 장학생은 총 2회 이상 활동 필수
- ⑤ (필수보고서)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및 나의 성장 기록 제출
 -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활동내역 및 멘토의견 작성
 - ※ 멘토의 경우, 멘토서약서 갱신 필요
 - 나의 성장 기록: 장학생 진로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기술
 - ※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 지원대상: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4년 대학 입학 및 재수 예정자)

① (학적 상태) 대학교 진학 예정인 자(대학입학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단, 재수 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 당해연도에 한하여 계속 지원 장학금 신청 및 심사 승인 시 1년간 자격유예**(* 1회만 가능)

* (자격요건) 차년도 계속 지원 장학금 신청 필수(나의 성장 기록 및 대학입학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유예기간) 고등학교 졸업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신입학 확정 시(2월)까지

〈 지원 가능한 대학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②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비교과 기준) 직전 학년 출결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 점검

대상	내용
출결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단,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사회적 물의 여부*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이 원칙이며, 계속심사 시 정기점검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

④ (멘토링 활동) 1:1 멘토링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필수

※ 신규 장학생은 총 2회 이상 활동 필수

⑤ (필수보고서)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및 나의 성장 기록 제출

-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활동내역 및 멘토의견 작성
- 나의 성장 기록: 장학생 진로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기술
- 학업계획서: 대학 진학 후 학업계획, 진로방향 등 기술

※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 지원대상: 대학교 재학생

① (학적 상태)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재입학, (타학교)신입학, 편입, 전공심화과정에 진학 예정인 자 포함
(지원가능 대학 p.28 참고)

②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교과 기준) 최소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적용

-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2회 이상 미충족 시 자격중단 처리

대상	최소 이수학점	성적 기준
대학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¹⁾	백분위 80점 이상 ²⁾
대학 신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타학교)신입학 ·편입·전공심화과정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단, 직전학기 성적 ³⁾ 은 반드시 존재(p.21 참고)	

1)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2) 「2023년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의 성적 산출기준을 따르며, 이 외의 사항은 대학 학칙을 준용

3) 재입학·(타학교) 신입학·편입·전공심화과정의 경우에도 이전 대학에서의 성적기준은 누적 적용함

④ (비교과 기준) 사회공헌활동 여부 및 사회적 물의 여부 점검

대상		내용		
사회 공헌 활동	대상 및 기한	구분	학제	수료 기한
		'20년 대학입학자*	2년제 3~6년제	대학 재학기간
		'21년 이후 대학입학자	2년제 3~6년제	2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4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 '21년 이후 편입·재입학·신입학 등을 한 경우 '21년 이후 기준 적용 ** 학기 종료 전의 기준은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를 의미		
	활동 내용 (택 1)	① 재단 지정 프로그램 1개 이상 활동 수료 - 복꿈 페스티벌(구. 멘토링캠프) 또는 복꿈 나눔 멘토링 멘토로 참여한 경우 - 재단 수기공모전에서 당선된 경우(중·고교 재학 중 당선작 인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다문화·탈북 멘토링,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사업 등 ②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2년제의 경우 15시간 이상): 증명서* 제출 * 정부 및 산하기관, 각 시·도별에서 주최하는 활동 중 자원봉사 포털(1365, VMS, 두볼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등		
사회적 물의 여부*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 처리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⑤ (필수보고서) 나의 성장 기록 제출

- 나의 성장 기록: 장학생 진로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기술
- ※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 졸업생 유의사항 >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23년 8월 졸업 예정	①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23년 6월 말
'24년 2월 졸업 예정	② 학적변경 신청서	'23년 12월 말

↳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개월 간 장학생 자격유예(장학금 지급중단)

< 제출 경로(재단 홈페이지) >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적정보변경신청(대학생)

나. 자격점검 관리 장학생의 계속지원 자격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점검 실시

□ (심사체계) 꿈·재능 장학생의 계속지원을 위해 정기·보완 심사 운영(연 2회)

- 정기심사(2월): 차년도 계속 지원을 위한 기본요건, 학적 및 필수 보고서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보완심사(8월): 2학기 계속 지원을 위한 기본요건, 학적 등을 중간 점검

〈 계속장학생 정기·보완 심사내용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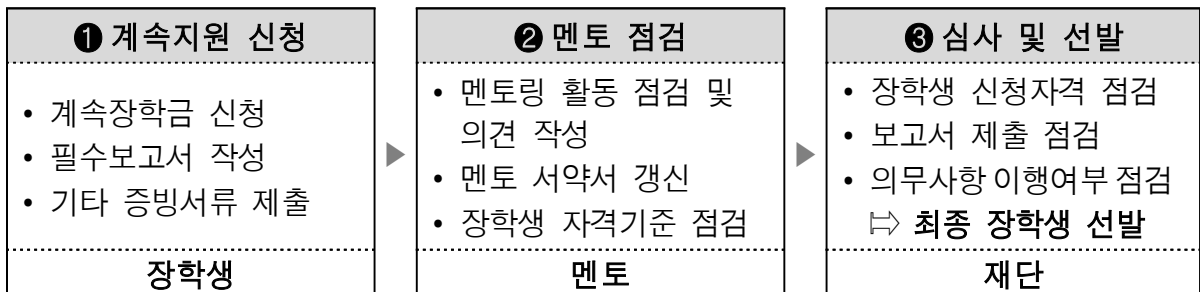
구분		정기 심사	보완 심사	
심사시기		'23. 12. ~ '24. 2.	'23. 7. ~ 8.	
① 공통	소득 기준(필요시 서류 증빙)	○	○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		
	사회적 물의 여부(연중 상시 점검)	○		
② 중·고생	출결	○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		
	대학 입학 및 재수 예정자*	대학입학 증빙서류	○	
		학업계획서	○	
③ 대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	○	
	사회공헌활동 여부	○	○	
	(필요시) 학적변경 신청서	○	○	
	(필요시) 대학입학 증빙서류	○		

* 재수 예정자의 경우 대학입학 증빙서류는 차년도 계속지원 정기심사 시 제출

※ 세부 내용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조

□ (심사절차) 장학생의 홈페이지 신청을 기반으로 재단에서 적격여부를 점검한 후 최종 대상자 선발

〈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기본절차 〉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세 절차 운영

다. 장학생 지원 제한 기준

□ (자격박탈) 장학생 자격유지에 심각한 결격사유 발생

- 향후 신규 장학생 신청 불가,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환수, 장학금 반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등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자격중단) 학년 미진급*, 상급학교 미진학(재수생 예외), 타 장학금 선택** 등 장학생으로서 요구되는 최소 자격기준에 미달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학년 미진학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이중수혜 기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선택하고, 꿈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 (단, 이중수혜 하는 경우에는 자격박탈에 해당)

- 향후 신규 장학생 참여 가능,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환수 등

□ (자격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장학생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

- 유예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중단, 사유 해소 시 장학생 자격복구

※ 자격유예 기간 동안 지급 중단된 장학금은 이월 또는 소급지급 불가, 자격유예 사유 해소 시 자격복구 시점의 익월부터 장학금 지급 재개

□ (지원종료) 지원기간 종료(SOS 유형, 대학 정규학기를 졸업한 자 등)

< 이중수혜 기준 >

-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 ③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 ④ 특정 기간 중 2회차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① + ② + ③ + ④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이중수혜로 간주,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타 장학금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제한 유형별 사유 및 조치사항〉

유형	사유	조치내용
자격 박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장학금 지원중단 허위청구 시점부터 수혜받은 장학금 (이자·제재부가금 별도) 및 미사용 잔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정학·퇴학 등 징계를 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 ④소속학교 판단 하의 국가장학생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장학금 지원중단 미사용 잔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금의 장학생 외의 자(학부모 포함)가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장학금 지원중단 기 지원받은 장학금 중 부정사용 금액(이자·제재부가금 별도) 및 미사용 잔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생이 수혜기간 중 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중수혜 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장학금 지원중단 이중수혜 금액 및 미사용 잔액 환수
자격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보완심사시 소득기준 확인 결과, 자격유예 (최대 3개월) 후에도 수급자격이 미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부적정 사용횟수가 연 누적 3회인 자 (중·고생) 자퇴, 휴학, 학년 미진급 등 자격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업 중단 (대학생) 자퇴, 제적 등 자격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업 중단 (대학생) 직전 학기 이수학점·성적 기준에 2회 이상 미달한 자 자격유예 불성실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유예기간이 소멸한 자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미신청자 및 심사탈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가능 ※ 장학생 선발과 기존 수혜 여부는 무관 장학금 지원중단 미사용 잔액 환수(단, 지원종료일 기준 익월까지 사용 가능)

유형	사유	조치내용							
자격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어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학생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대학생) 휴학으로 인한 학업 중단(군입대 포함) • (고교 졸업생(재수예정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해연도의 대학 미진학자로 정기 계속심사를 통과한 자 ※ 유예기간은 졸업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신입학 확정 시(2월)까지로 1회에 한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기간동안 장학금 지원중단 • 미사용 잔액은 장학금 사용기간(p.22)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 • 사유 해소 시 자격복구 ※ 단, 유예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장학금은 소급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심사(정기·보완) 시 소득기준 자격 미충족시 최대 3개월 자격유예 및 수급자격 재점검 • 매년 장학생의 활동 점검 결과, 활동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불성실 기준</td> <td>장학생 연락 두절*</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r> <tr> <td>장학금 부정사용 소명 불응</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r> <tr> <td>대학졸업자 보고서 미제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2개월</td> </tr> <tr> <td>사회공헌활동 의무 불이행</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r> </table> <p>* 재단 최초 연락일부터 90일 기준</p>		불성실 기준	장학생 연락 두절*	3개월	장학금 부정사용 소명 불응	3개월	대학졸업자 보고서 미제출	2개월
불성실 기준	장학생 연락 두절*	3개월							
	장학금 부정사용 소명 불응	3개월							
	대학졸업자 보고서 미제출	2개월							
	사회공헌활동 의무 불이행	3개월							

※ 상기 지원 제한 사유 및 조치내용은 예시(안)으로 구체적인 사유 발생 시 이에 준하여 판단하되 학생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내용 결정

※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관한 일체 내용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1.1.시행) 및 동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지원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필수서류 제출* 필요**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장학생 · 멘토 준수사항 〉

1.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2. 장학생은 재단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3. 장학생은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재단에 즉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장학생에게 있음 (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
4. 장학생은 계속장학금 신청 시 기본(학적)정보,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장학생 기재사항을 스스로 작성하고, 필요 시 기타 서류 등을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함
5. 장학생은 계속장학금 신청 후 수정사항(필수보고서 등) 발생 여부를 재단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사항 미보완으로 인한 자격중단 시 귀책사유는 장학생에게 있음
6. 장학생은 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성장도 측정조사 및 졸업 이후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추적조사(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7. 장학생은 장학금을 생활비 목적이 아닌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의 부정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8. 장학생은 국가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9. 장학생 및 멘토는 재단에서 요청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따라야 함
10. 멘토는 장학생에 대한 올바른 장학금 카드사용 지도와 함께 멘토링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11. 장학생 · 멘토는 학적 변동 및 장학생의 자격 유지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해야 하며, 필수 서류 등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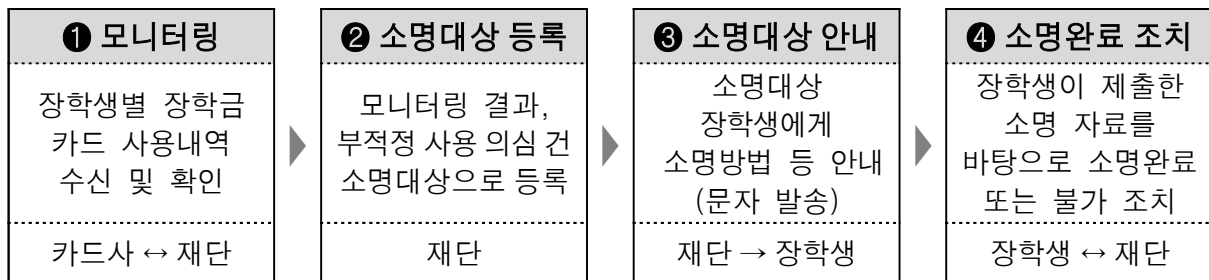
V

장학금 지급 사후관리

가. 카드사용 점검 관리 장학생의 학업 목적 범위 내 카드사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장학생의 올바른 학업장려비 사용 유도를 위해 장학금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부적정 사용 소명관리 추진

〈 장학금 카드사용 점검 관리 기본절차 〉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세 절차 운영

○ (점검방법) 장학금 카드 사용내역을 3가지 기준에 따라 점검

① (사용제한업종 사용여부) 카드 사용 가능 업종 범위 외 사용여부 점검

❖ (장학금 카드사용 우선소명 대상)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온라인 결제 사용			
구분	인터넷 상거래	PG*	오픈마켓**
주요 가맹점명	네이버파이낸셜(주) 네이버페이 등	이니오스, TOSS, 쿠팡(오피), 카오피, NOO한국사이버결제(KCP), 모빌리오 등	11번오, G마켓, 옥오 등
* PG: 전자지급결제대행, 가맹점 등과 계약을 통해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서비스 업체 ** 오픈마켓(Open Market):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인터넷 중개물			

② (키워드명 검색) 학업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키워드 적용

※ 예시: ○○포차, ○○호프 등 주점 사용 의심, ○○백화점, ○○홈쇼핑 등 가계 생활비 사용의심 등(모니터링 진행과정에서 키워드 지속 보강 예정)

③ (고액결제 점검) 불명확한 거래건 중 단일거래 또는 특정 가맹점에서 반복결제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역 점검

○ (후속조치) 모니터링 소명 부적정 대상자의 경우, 지원제한 조치

※ 소명 불응 시 자격유예, 소명 불충분 시 해당 금액 차감 지급, 장학금 부적정 사용횟수 연 3회 이상 발생 시 자격중단 등 조치 가능

나. 장학금 반환관리 자격 제한 확인 등에 따라 기지급된 장학금의 반환관리 실행

- 장학생의 **자격 제한사유**(자격유예, 자격중단, 자격박탈 등) 발생에 따라 부적정 지급 또는 수혜 가능횟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반환관리 실시

〈복권기금 장학금 반환관리 절차〉

기지급된 장학금의 반환 필요 사유 발생 시, 장학금 반환 실시

① 사후관리에 따른 반환대상자 반환 절차

반환사유 통지 반환사유 발생 즉시 재단으로 반환사유 통지 반환대상자 → 재단	반환금 산정* 반환사유 인지 즉시 사유발생일 및 반환대상금액 확인 재단	반환 결정 · 통지 사유발생일 이후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반환금 결정 · 통지 재단 → 학생 · 학부모	장학금 반환 재단이 반환을 통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일시반환 또는 분할반환 약정 체결 학생 · 학부모 → 재단
---	--	--	--

* 장학금 반환액 산정 시점에 반환대상자의 장학금 미사용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차감하여 반환금 산정

② 부정이익 환수 대상자 환수 절차(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 준수)

부정이익조사대상자 지정 · 관리 부정이익 조사 대상자 환수 필요 여부 확인 재단 → 반환대상자	정기조사 계획 수립 정기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 안내 재단	정기조사 실시 및 조사 종결 부정청구 확인, 조사결과 통보,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재단 → 학생 · 학부모	부정이익환수대상자 지정 · 관리 환수처분통지 (납부고지) 재단 → 환수대상자
---	---	--	---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세 절차 운영

□ 공공재정환수법*(‘20. 1. 1.시행)의 적용 안내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근거

- 부정청구 발생 시 환수에 관한 일체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행위* 구분(아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유형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청구 환수금액 산정: 부정이익 가액¹⁾+이자²⁾+제재부가금³⁾

1) (부정이익 가액 산정)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산정(아래 표 참고)

2) (이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개월수로 이자 계산(「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른 이자율 적용)

3) (제재부가금 산정)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산정(아래 표 참고)

유형	부정이익 가액 ¹⁾	제재부가금 ³⁾
허위청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부정이익 가액의 5배
과다청구	과다청구 공공재정지급금 -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액	부정이익 가액의 3배
목적외사용	목적외 사용된 공공재정지급금액	부정이익 가액의 2배
오지급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없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발생시 환수 절차

- 신고(적발) → 조사 → 환수처분 및 지급취소·중단 → 조사 결과 통보 및 부과통지서* 발부 → 이의신청 → 독촉 안내문 발송 → 재산조사 → 납부최고서 발부 → 압류 → 매각(공매) → 청산(배분)

* (가산금 발생) 부과통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최대 5% 이내에서 가산금 부과

□ 장학금 반환 부담 경감제도 운영

- 대상자가 반환이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반환부담 경감제도를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반환 이행 도모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환금 면제·유예 여부 결정
 - ※ 단, 반환 사유 발생일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장학금 반환 면제·감면 및 유예 유형 >

구분	유형	사유
면제 및 감면	[유형1] 사망	· 장학생 본인 사망 시
	[유형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 및 시설에 위탁 중인 경우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유형3] 장애판정	· 장학생 본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유형4] 중증질환	· 장학생 본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유예	[유형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유형2]	· 출산
	[유형3]	· 군복무(예정)자
	[유형4]	· 부 또는 모의 사망
	[유형5]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유형6]	· 부 또는 모가 중증질병* 발병 시 *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상해,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유형7]	· 본인이 장애인
	[유형8]	· 기타 등의 사유로 반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 장학금 반환·유예 유형(감면 사유)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감면 비율 높은 유형으로 우선시하여 적용
- ※ 반환 유예 유형 4,5,6의 경우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함
- ※ 면제비율 및 제출서류 등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VI

추진 일정

※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동 가능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계획 확정	~ '23. 3월	교육부, 재단
사업공고	'23. 3월말	홈페이지, 시도교육청 등
장학생 모집	[꿈] 〈약 3주〉 '23. 4. 3.(월) 9:00 ~ 4. 21.(금) 18:00	소속학교에서 추천(신청)
	[SOS 1차] 〈약 3주〉 '23. 4. 3.(월) 9:00 ~ 4. 21.(금) 18:00	
	[SOS 2차] 〈약 3주〉 '23. 8. 21.(월) 9:00 ~ 9. 8.(금) 18:00	
선발 심사	[꿈] 〈약 2개월〉 '23. 4 ~ 6월 (7월부터 지원)	재단 (선발 유형별 평가단 운영)
	[SOS 1차] 〈약 1개월〉 '23. 4 ~ 5월 (5월부터 지원)	
	[SOS 2차] 〈약 1개월〉 '23. 9월 (9월부터 지원)	
교육 지원	[성장 멘토링] - 1:1 멘토링 연중 상시 (학기별 2회 이상 활동 필수)	재단 (개별 프로그램 대상자 별도 안내)
	[나눔 멘토링] - 선·후배간 멘토링 '23. 6 ~ 10월	
	[멘토링 특별활동] -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23. 6 ~ 10월	
	[복·꿈·페] - 장학생들만의 축제 '23. 7 ~ 10월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 장학생 진로설정 보조 '23. 6 ~ 11월	
계속지원 심사	[심사 안내] '23. 12월 초	재단 (개별 장학생 심사 진행 시 추가 확인·요구사항 발생 가능)
	[신청 접수] '23. 12월 ~ '24. 2월	
	[심사 완료] ~ '24. 3월	

문의처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
- (연락처) 1599-2290
- (홈페이지) www.kosaf.go.kr(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온라인상담))
- (장학생 커뮤니티) <https://cafe.daum.net/dreamladder-kosaf>

별첨1

장학금 카드사용 범위 안내

용도 1. 교육 학습 및 진로 역량 개발 지원: 총 18개 허용

업종		여부	업종		여부
교육	유치원	X	서적 문구	서적	O
	초중고등학교	O		교육 및 교구	O
	대학교, 대학원	X		문구, 사무용품	O
	입시학원, 보습학원	O		완구	X
	외국어학원	O		가구	O
	자동차운전학원	O	기타 사무용 기기	X	
	예체능 계열 학원	O	광학	카메라, 캠코더	O
	무술도장	O		안경, 광학제품	O
	기술, 직업훈련학원	O	기타 상품	비료, 사료, 종자	X
	기타 교육, 교습, 학원	O		미용재료	O
스터디 카페	O	선물용품점		X	
가전제품	X	시계, 귀금속, 화장품		X	
가전 전자 컴퓨터	통신기기	O	유희, 사치용품	X	
	컴퓨터 및 주변기기	O			
	기타 전자제품	X			

용도 2. 진로·적성 탐색 기회 지원(체험학습, 취미레저 포함): 총 21개 허용

업종		여부	업종		여부
숙박	호텔(특급)	X	취미 레저 스포츠	골프장	X
	호텔(특급 외)	O		골프연습장	X
	레저용 숙박업소	O		헬스클럽	O
	기타 숙박업소	O		당구장	X
여객 화물 운송	항공사	X		영화, 공연장	O
	철도	O		기타 취미, 레저	O
	지하철	O		종합 스포츠용품점	O
	시내버스	O		전문 스포츠용품점	O
	고속, 시외버스	O		악기 판매점	O
	택시	O		비디오, 음반	O
	여객선	O		화원, 화초	X
	기타 승객운송업	O		예술품, 골동품	X
	택배 서비스	X		수집품, 기념품	X
	기타 화물운송업	X		화방, 표구점	O
여행 오락 휴식	여행사	X		민예품, 공예품	X
	유학, 이민 대행사	X		애완동물, 용품	X
	테마파크	O		충포류	X
	노래방	X		기타 레저 용품	O
	성인오락실	X		※ 후불교통기능(지하철, 시내버스)은 만 18세 이상 고객에게 발급 가능하며, 카드발급 시 교통기능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	
	카지노 등	X			
	기타 오락시설	X			
	기타 문화시설	O			

용도 3. 학업 환경 조성 지원: 총 25개 허용

업종		여부	업종		여부
유통 판매	슈퍼마켓, 마트	○	음식점 주점	일반음식점	○
	편의점	○		중식전문점	○
	농수축협직판장	X		일식전문점	○
	농협식품전문점	X		서양식전문점	○
	소비조합(구내매점)	○		패스트푸드점	○
	기타 종합소매점	○		치킨전문점	○
	백화점	X		뷔페, 출장연회	X
	면세점	X		커피전문점	○
	대형 할인점	X		아이스크림전문점	○
	연쇄점	○		기타 음식점	○
	기타 아울렛 등	X		일반주점	X
	PG(일반) [우선소명 업종]	○		유흥주점	X
	PG(공공서비스) [우선소명 업종]	○		단란주점	X
	PG(오픈마켓) [우선소명 업종]	○		기타주점	X
	PG(소득공제 제외)	X	의류 잡화	일반의류	○
	PG(대학 등록금)	X		내의류	○
	PG(기타) [우선소명 업종]	○		모피, 무스탕	X
	인터넷상거래 [우선소명 업종]	○		교복	○
	홈쇼핑	X		양복점, 한복점	X
	통신, 방문판매	X		가방, 핸드백	X
기타 무점포	X	구두, 신발		○	
인삼 전문점	X	가발		X	
제과, 제빵	○	기타 잡화		X	
농산물, 청과물	X				
수산물, 건어물	X				
축산물, 정육점	X				
건강보조식품	X				
주류 전문점	X				
기타 식음료품	○				

※ [온라인 사용 우선 소명 유의] 온라인 카드사용은 정기 모니터링 시 우선 소명 대상이 됨을 참고하여 신중한 카드사용 바랍니다. (카드사용 소명 불가 시 향후 지급될 장학금에서 해당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유의 사항.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장학금 카드사용이 불가합니다.**

- ① 가정용품: 침구, 커튼, 수예품, 정수기, 비데, 주방용품, 보일러 등
 - ② 차량 관련 용품: 자동차(오토바이, 자전거 포함) 관련 수리, 부속, 용품 등
 - ③ 보건 및 의료 관련: 병원(한의원, 동물병원 포함) 진료, 의약품, 의료기기, 복지시설 등
 - ④ 금융 및 공과금: 은행 예치, 보험 지출, 세금·관리비·통신요금 등
 - ⑤ 생활 서비스 이용: 목욕, 미용, 피부관리, 안마, 세탁, 사진 촬영, 광고 및 인쇄, 운전 대행, 각종 렌트, 가례, 부동산 임대비 및 중계 수수료 등
 - ⑥ 기타: 기부금(정치자금), 각종 단체회비, 상품권류 구매 등
- ※ [카드사용 문의] 실제 가맹점별 장학금 카드 사용 가능 여부는 하나카드사 (1800-1111)에 문의 바랍니다,